

외국인 원생에 관한 내규

제1조(목적) 본 내규는 학칙 제8장에 의거하여 입학하고자 하는 외국인 원생(재외교포 포함)에게 적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인 원생의 범위) 이 내규에서 말하는 외국인 원생은 외국의 국적을 가진 원생 외에 해외 교포 원생을 포함한다.

제3조(지원 자격) 국내·외 정규대학에서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취득예정자로서 입학 후 수업에 지장이 없는 정도의 한국어가 가능한 자라야 한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재학 중 한국어 연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4조(선발 절차) 본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외국인 원생의 선발절차는 학칙 제8장 제45조에 준하되,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발한다.

제5조(외국어시험) 삭제

제6조(종합시험) 신학대학원 자격시험인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외국인 원생은 답안지를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학위논문 용어) 학위논문은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입학전형 구비서류) 본 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외국인 학생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지원한다.

1. 입학원서(본원 소정양식) 1부.
2. 대학졸업(예정) 증명서 1부.
3. 대학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4. 학사 학위증 사본 1부.
5. 수험능력 및 한국어 실력을 입증할 만한 자료 1부.
6. 추천서(담임목사, 소속선교사, 기관장) 1부.
7. 세례증명서 1부.
8. 신앙고백서 1부.
9. 개인소개서/이력서 1부.
10. 재정보증서 1부.
11. 신원보증서 1부.
12. 건강진단서 1부.
13. 출입국 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소) 1부.
14. 대학 인가 확인서 사본 및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각 증명서 법률사무소 “번역공증”서류
15. 기타 필요한 서류 (모집시에 공고)

부 칙

1. 본 내규는 1993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 내규는 2005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 내규는 2006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 내규는 2008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